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69308(본소), 2023가단69315(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38,193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원고는 2022. 5. 26. 포장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2합 풀발이(접착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5. 31.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운전 등에 이견이 있어 이를 반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22. 7. 19. 원고에게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불각서

각서인: 피고

금액: 9,000,000원

지급기일: 이 사건 기계의 판매가 완료된 시점

피고는 2022. 5. 26. 계약하고 원고에 납품한 위 기계의 반품에 따른 계약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반환한다.
2.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20%)를 추가로 납부한다.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초

본을 원고가 발급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4.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여하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물품계약서), 갑 제2호증(입금증), 갑 제3호증(지불각서,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2. 7. 19.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9,000,000원을 이 사건 기계의 판매 완료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2. 2.경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 판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본소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중국에서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2022. 7. 13. 원고에게 납품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 변심으로 이 사건 기계의 반품을 요청하였고, 대신 반품으로 인한 비용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으로 30,038,193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면 피고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단순 변심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피고는 그 계약금의 물취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당사자 쌍방이 정산할 금전 채권이 있다면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이고, 당사자 일방의 채권액이 불명확하여 당장 정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권액이 특정된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상당의 지연손해금만을 더하여 향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기의 해태에 대한 불이익을 부가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 외에 원고의 비용지급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반품 당시 피고에게 비용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계의 반품이 원고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30,038,193원 상당의 비용반환약정에 의한 채권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비용반환 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봉